

직위해제처분등취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8구합○○○○○ [1심]	사건유형	공무원신분
원고	□□□	피고	인천광역시교육감
판결선고일	2019. 3. 21.	비고	
사건개요	<p>원고는 ■■■초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직원에게 13만원 상당의 스카프 수수, 예산의 목적외 사용, 방과후강사 채용 면접평가 시 선정자 및 으뜸강사 선정자 변경 지시, 개인적인 용무 부당지시 및 부적절한 발언, 위증지시의 징계사유로 2017. 5. 16.자 ‘직위해제’ 처분되었으며, 2017. 7. 12. ‘해임’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되었고, 2017. 9. 20.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됨. 이에 이 처분은 위법부당 하고,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.</p>		
주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		
청구취지	<p>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. 5. 16.자 직위해제처분 및 2017. 7. 12.자 해임처분을 취소한다.</p>		
판결이유	<p>○ <u>직위해제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.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차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, 초등학교 교장인 원고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음. <p>○ <u>징계사유가 인정되고,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.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도·감독하며, 학생을 교육하는 직위에 있으므로, 초등학교 교장인 원고는 일반 교원에 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추어야 하고, 교직원과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함. -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초등학교 교장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비위의 정도가 무거움. - 이 사건 징계사유의 비위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, 징계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. -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교육공무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, 다수의 표창을 받은 바가 있으나,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므로, 그에 대한 징계로 원고를 해임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. 		
결론	<p>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/p>		